

2023년 1월 26일 제정

# 보상위원회 규정



규 정	관계법령 및 규정
<p><b>제 1 장 총 칙</b>  <b>제 1조(목적)</b>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오리온의 이사회 내에 설치된 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 2조(적용범위)</b>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<b>제 3조(직무와 권한)</b>  ① 위원회는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, 의결한다.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•상법 제393조의2(이사회내 위원회)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</p> <p>•정관 제40조(이사회내 위원회)  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1. 감사위원회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.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위원회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정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</p>
<p><b>제 2 장 구 성</b>  <b>제 4조(구성)</b> 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  ②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 ④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  ⑤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 5조(위원장)</b>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  ②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.  ③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</p>	<p>•상법 제393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</p> <p>•정관 제40조(이사회내 위원회) 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</p>
<p><b>제 3 장 회 의</b>  <b>제 6조(종류)</b>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  ② 정기위원회는 1월~2월에 개최한다.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 7조(소집권자)</b>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<b>제 8조(소집절차)</b>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.  ②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</p> <p><b>제 9조(결의방법)</b>  ①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.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상법 제393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  ⑤ 제386조 제1항(결원의 경우)  · 제390조(이사회 소집) · 제391조(이사회 결의방법) · 제391조의 3(이사회 의사록) 및 제392조(이사회 연기·속행)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</p> <p>※ 상법제386조(결원의 경우) 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음</p>

규 정	관계법령 및 규정
<p><b>제 10조(부의사항)</b>           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-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          -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정책(등기, 미등기)            - 임원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(등기, 미등기)            -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<b>제 11조(관계인의 출석 등)</b>          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         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<b>제 12조(통지의무)</b>          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(1주일)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 13조(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)</b>           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.          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</p> <p><b>제 14조(간사)</b>           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.         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.</p>	<p><b>※ 상법 제390조(이사회소집)</b>          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           그러나 이사회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       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        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.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음</p>
<p><b>제 4 장 보 칙</b>  <b>제 15조(규정의 개정)</b>          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</p> <p><b>부 칙</b>           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	